

교원인사 규정

<제정 1984.03.01.>, <39차 개정 2024.02.27.>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상명학원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명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교원인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5.26., 2019.08.14>

제 2 조 (전임교원의 구분) ① 전임교원은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구분한다.

② 전임교원은 역할과 기능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신설 2010.02.19, 개정 2010.04.30, 2012.07.22., 2014.06.10>

1. 일반트랙: 학생교육, 학술연구 및 학생지도 등을 담당한다. <신설 2014.06.10.>
2. 연구중점트랙: 학술연구를 중점적으로 담당한다. <신설 2014.06.10.>
3. 산학협력중점트랙: 산학협력 활동, 학생의 취업 및 창업지도를 중점적으로 담당한다. <신설 2014.06.10.>

③ 전임교원의 직급은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로 구분한다. <개정 2010.02.19., 2012.07.22>

④ 제2항 제1호의 전임교원은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학협력중점트랙 전임교원으로 전환할 수 있다. <신설 2018.02.23.>

제 3 조 (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우리 대학교 정년트랙 전임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9.08.14.>

②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석좌교수, 초빙교수, 명예교수, 겸임교수, 연구교수, 특임교수 및 강사의 임용과 위촉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07.22, 2014.06.10., 2022.04.29>

제 4 조 (교원인사위원회) 교원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학교법인 상명학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05.26.>

제 2 장 임 용

제 1 절 통 칙

제 5 조 (교원의 임용자격) ① 교원의 신규임용은 「고등교육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자격

3-1-3 교원인사 규정

이 있는 자로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를 갖춘 자라야 한다.
<개정 2009.08.28, 2010.02.19, 2010.04.30, 2012.07.22, 2016.09.01., 2018.02.23>

1. 교수 -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대학에서 교수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국·공립 연구기관에서 정규 연구원으로 1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신설 2009.08.28, 개정 2010.02.19., 2011.03.01>
2. 부교수 -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국·공립 연구기관에서 정규 연구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신설 2009.08.28, 개정 2010.02.19., 2011.03.01>
3. 조교수 - 박사학위를 가진 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연구실적연수 및 교육경력연수가 4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신설 2009.08.28, 개정 2010.02.19, 2011.03.01., 2012.07.22>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대학 또는 산업체에서 해당전공과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게는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원의 직급을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09.08.28, 개정 2011.03.01, 2012.07.22, 2018.02.23., 2019.03.01>

② 제1항의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 중 어느 하나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의 합계가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전항의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신설 2018.02.23.>

제 6 조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교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마.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단, 「형법」 제129조 부터 제132조까지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함)
 - 바.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사. 교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아.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자.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차.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개정 2017.05.26.>
-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개정 2017.05.26.>
-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개정 2017.05.26.>
- 4. 삭제 <2017.05.26.>
- 5. 삭제 <2017.05.26.>
- 6. 삭제 <2017.05.26.>
- 7. 삭제 <2017.05.26.>
- 8. 삭제 <2017.05.26.>
- ② 전 각 호의 사항 이외에도 교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7.05.26.>

제 7 조 (임용기간) ① 교원은 교수업적이 객관적으로 평가되고 교원으로서의 자질이 인정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임용기간 범위 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8.02.23.>

- 1. 교수: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 또는 교수로 최초 임용되는 경우(해당 대학의 부교수가 교수로 임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02.23.>
- 2. 부교수: 5년 <개정 2018.02.23.>
- 3. 조교수: 3년 <개정 2012.07.22., 2018.02.23>

② 삭제 <2021.10.21.>

제 8 조 (임용기간 계산) ① 제7조의 임용기간은 우리 대학교의 임용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되, 재임중에 승진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다시 그 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2019.08.14.>

- ②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기간이 학기도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 학기의 말일을 임용기간의 만료일로 본다.
- ③ 공무로 국외파견 또는 국외출장 중인 자가 제7조에 의한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그 파견 또는 출장 잔여기간까지를 임용기간으로 본다. 다만, 그 잔여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8.02.23.>
- ④ 「학교법인 상명학원 정관」 제37조 제2호·제4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1-3 교원인사 규정

제7조의 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02.23.>

⑤ 제7조 제1항의 임용기간 중 정년에 도달하는 경우 「학교법인 상명학원 정관」 제34조의 2 제2항에 의한다. <신설 2021.12.20.>

제 9 조 (임용절차) ① 교원의 임용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후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행한다. <개정 2018.02.23.>

②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하며 계약조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③ 교원 임용계약 해당자는 교원의 임용을 위한 심사 및 인사관리에 필요한 소정의 서류를 관련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교원의 임용은 발령과 함께 임용장의 교부로서 행한다.

제 10 조 (업적평가반영) ① 교원의 승진 및 재임용 심사(재계약 임용 포함. 이하 “재임용”이라 칭함)를 위하여 교육, 연구, 산학 및 봉사영역 업적평가 중 해당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07.22., 2015.11.27>

② 제1항의 반영기준은 우리 대학교 「교수업적평가 규정」을 근거로 한다. <개정 2016.09.01., 2019.08.14>

③ 재임용의 경우 업적평가는 정기업적평가 외에 특별업적평가를 시행하여 반영한다. <신설 2016.09.01.>

제 11 조 (경력조회) 경력이 있는 자를 교원으로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전직 근무처에 경력 조회를 하여 본인의 이력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02.23>

[제목개정 2018.02.23.]

제 12 조 (직급별 임용비율) 총장은 우리 대학교의 실정을 감안하여 직급별 적정 교원수를 위한 구체적인 비율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02.23., 2019.08.14>

제 13 조 (임용 시기) 교원의 임용은 3월 1일과 9월 1일자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할 수 있다.

제 2 절 신 규 채용

제 14 조 (교원 신규채용절차) ①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되 별도의 단계를 거쳐 시행하며, 그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02.23.>

② 교원의 신규채용 공고는 지원마감일 15일 이상으로 채용분야, 채용인원, 지원자격, 심사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관보 또는 정보통신망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한다. <개정 2010.02.19., 2018.02.23>

③ 신규채용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교무처장은 필요한 경우 이외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02.19., 2018.02.23>

1. 교원임용지원서(우리 대학교 소정 양식) <개정 2019.08.14.>
 2. 연구실적목록(우리 대학교 소정 양식) <개정 2019.08.14.>
 3. 자기소개서(자유양식)
 4. 강의안(2차 심사용)
 5. 학위 및 성적증명서
 6. 경력 및 재직증명서
 7. 연구실적물(최근 4년 이내 연구실적물이 200%이상 포함되어야 함. 다만, 산학협력중점 트랙 및 원어민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01.09., 2018.02.23>
- ④ 교원의 신규채용 심사위원은 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 및 채용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외부 심사위원을 3분의1 이상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심사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02.23>
- [제목개정 2018.02.23.]

제 14 조의2 (특별채용)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8.02.23.>

1. 외국인 교원
 2. 특정분야 전문가
 3.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임용예정 직에 관련성이 있는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실적이 있는 자
- ② 특별채용을 위하여 교원특별채용위원회 및 산하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구성 및 기능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02.23.>
1. 교원특별채용위원회 위원장은 총장으로 한다. <개정 2018.02.23.>
 2. 교원특별채용위원회는 교원특별채용소위원회 심사의 적절성 심의와 면접심사를 담당한다. <개정 2018.02.23.>
 3. 교원특별채용소위원회는 기초 및 전공심사를 담당하며, 교무처장을 소위원장으로 한다. 다만, 소위원장은 심사에서 제외하며 교원특별채용소위원회를 관리·감독한다.
 4. 교원특별채용위원회 및 교원특별채용소위원회 위원은 총장이 위촉한다. 다만, 교원특별채용소위원회 위원수의 1/3이상은 외부심사위원을 위촉한다.
 5. 교원특별채용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당해 특별채용절차의 종료와 더불어 해체된다. <개정 2018.02.23>

[본조신설 2014.01.09.]

제 15 조 (신규채용의 제한) ① 교원을 신규채용 할 때에는 특정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가 「학칙」이 정하는 학생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대학 학사학위를 소지한 경우라도 그 학사학위 전공분야가 그 대학에 채용되어 교육·연구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이를 특정대학 학사학위소지자로 계산하지 않는다. <개정 2012.07.22., 2018.02.23>

② 제1항은 학년도 말을 기준으로 그 학년도까지의 누적 채용인원을 통산하여 적용하되, 모

3-1-3 교원인사 규정

집단위별 채용인원이 3명 미만인 경우에는 누적 채용인원이 3명 이상이 되는 학년도의 말까지를 통산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2.07.22, 2018.02.23>

[제목개정 2018.02.23.]

제 16 조 (경력연수 계산) ① 둘 이상의 기관에서 동일한 기간에 교육과 연구에 종사한 경우에는 한 기관에서의 교육 또는 연구에 종사한 기간만을 경력연수로 계산한다. <개정 2018.02.23.>

② 경력연수의 산출기준 등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07.22, 2018.02.23>

[제목개정 2012.07.22.]

제 3 절 승진임용

제 17 조 (승진요건) ① 교원이 승진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복무규정」 준수 <개정 2016.09.01.>
2. 승진소요 최저연수
3. 연구실적물 ("별표1"에 의함) <개정 2010.02.19., 2018.02.23>
4. 교수 직급 승진시 박사학위(명예박사 제외)
5. 학교 명예준중 및 교수로서의 품위유지

② 제1항 제2호의 승진소요 최저연수는 다음과 같다.

1. 부교수 - 교수: 5년 <개정 2018.02.23.>
2. 조교수 - 부교수: 6년 <개정 2012.07.22., 2018.02.23>

③ 삭제 <신설 2015.05.28, 개정 2018.02.23., 2018.08.31>

④ 해당학기의 최종일을 기준으로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충족한 교원에게 그 학기의 종료일로부터 4개월 전까지 승진임용대상자라는 사실을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교원이 승진임용을 받으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총장에게 승진임용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단, 승진소요 최저연수 충족으로 최초 승진임용대상자가 된 교원은 승진임용 심의 신청을 생략한다. <신설 2018.02.23.>

⑤ 승진임용심사대상자는 필요한 업적물 또는 게재예정증명서, 투고증명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자료는 게재예정기관의 증명 또는 확인 된 것에 한한다. <신설 2018.02.23, 개정 2020.07.10.>

⑥ 승진요건의 충족여부를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며, 심의과정에서 제1항의 승진요건에 미달될 경우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승진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증명하여 이의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8.02.23.>

⑦ 임용권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승진임용 심의 등을 거쳐 해당 교원의 승진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승진임용 예정일 2개월 전까지 해당 교원에게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교원을 승진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승진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승진임용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02.23.>

제 18 조 (박사학위 미소지자 승진특례) 제17조 제1항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승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07.22., 2018.02.23>

1. 일반계는 제17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충족과 국제학술지 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에 등재된 학술지에 3편(300%) 이상의 추가 논문을 게재한 경우 <개정 2012.07.22., 2018.02.23., 2021.12.20>
2. 예·체능계는 제17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충족과 개인전, 초대전, 국제전, 개인발표회, 협연 중 3회(300%) 이상의 추가 실적이 있는 경우 <개정 2012.07.22., 2021.12.20>

제 19 조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정) ① 승진소요 최저연수는 우리 대학교의 현재 직급으로 재직할 기간만을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조교수로 신규임용되는 교원의 경우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4년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우리 대학교 신규임용 직급 재직 기간 동안의 연구실적이 "별표1"을 충족하는 경우 승진할 수 있다. <개정 2012.12.04., 2018.02.23., 2019.08.14>

1. 국내·외 정규 4년제 대학 전임강사 이상 재직연수가 2년 이상인 자 <신설 2012.12.04, 개정 2018.02.23.>
2. 국·공립 연구기관에서 정규 연구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할 경력이 있는 자 <신설 2012.12.04.>

② 「학교법인 상명학원 정관」 제37조 제2호·제4호부터 제8호까지에 의한 휴직기간은 최대 2년의 범위 내에서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개정 2018.02.23., 2021.10.21>

③ 우리 대학교의 비정년트랙에서 정년트랙으로 전환임용된 교원의 비정년트랙 재직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다. <신설 2018.02.23, 개정 2019.08.14., 2024.02.27>

1. 비정년트랙 재직기간의 60%를 승진 소요연수에 산입한다. 단, 부교수가 조교수로 전환 시 부교수 재직기간은 100% 승진 소요연수에 산입한다. <신설 2024.02.27.>
2. 비정년트랙 재직기간의 6개월 단위 미만은 산입하지 않으며, 전환 시 경력 인정된 재직기간이 승진 소요연수를 충족한 경우는 동일 시점의 승진 임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4.02.27.>

④ 제1항의 기간에는 제2항을 제외한 휴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제20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직위해제 처분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신설 2019.08.14, 개정 2021.12.20.>

1.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신설 2019.08.14.>
2. 직위해제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의결 요구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신설 2019.08.14, 개정 2021.12.20.>

3-1-3 교원인사 규정

3. 직위해제처분의 원인이 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또는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 <신설 2019.08.14, 개정 2021.12.20.>
4.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설 2019.08.14.>
5. 제1호부터 제4호에도 불구하고 본 규정에 정의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신설 2021.12.20>
[제목개정 2012.07.22.]

제 20 조 (승진임용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1.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중에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금전·물품·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공금에 대하여 횡령·배임·절도·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 소극행정·음주운전·성폭행·성희롱·성매매·상습폭행·학생성적 관련 비위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승진제한을 받고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 당초 처분 기간이 종료되는 날로부터 새로운 징계처분에 의한 승진 제한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18.02.23, 2018.08.31., 2024.02.27>
 - 가. 정직: 18개월 <개정 2018.02.23.>
 - 나. 감봉: 12개월 <개정 2018.02.23.>
 - 다. 견책: 6개월 <개정 2018.02.23.>

제 4 절 재 임 용

제 21 조 (재임용 요건) ① 교원이 재임용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복무규정」 준수
 2. 재임용 소요연수: 제7조에 따름 <개정 2016.09.01., 2018.02.23>
 3. 교육, 연구, 산학 및 봉사영역 업적평가 점수("별표2"에 의함) <개정 2012.07.22, 2015.11.27., 2018.02.23>
 4. 연구실적률 조교수 360%이상, 부교수 600%이상 <개정 2012.12.04, 2015.05.28, 2018.02.23, 2018.08.31., 2019.03.01>
 5. 학교 명예존중 및 교수로서의 품위유지
- ② 제1항 제3호를 충족하기 위한 재임용 기간 중의 업적평가 점수 산출방법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8.02.23.>
- ③ 제1항 제4호의 연구실적 범주는 「교원학술연구 규정」 제4조 제1항,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로 한다. 연구실적률의 인정은 「교원학술연구 규정」 제5조 및 "별표"의 인정환산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6.09.01., 2019.03.01>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산학협력중점트랙은 조교수 270%, 부교수 450% 이내에서 「교원학술연구 규정」 제4조 제2항 제6호를 연구실적 범주로 포함한다. <신설 2019.08.14.>

- 제 22 조 (재임용의 심사 및 절차)** ① 교원의 재임용 심사는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시행하며 「교수업적평가 규정」에 의한 업적평가결과와 「교원학술연구 규정」에 의한 연구실적 등으로 재임용 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의한다. <개정 2010.04.30, 2016.09.01., 2018.02.23>
- ② 교원이 「교수업적평가 규정」에 의한 업적평가결과와 「교원학술연구 규정」에 의한 연구실적이 재임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임용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09.01., 2018.02.23>
- ③ 총장은 교원의 임용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해당 교원에게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으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총장에게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02.23.>
- ④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이 심의과정에서 제21조의 요건에 미달될 경우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8.02.23.>
- ⑤ 재임용 심의를 신청받은 임용권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 등을 거쳐 해당 교원의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해당 교원에게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04.30., 2018.02.23>
- ⑥ 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여 최종적으로 재임용이 거부될 경우 임용기간 만료시 당연 퇴직한다. <개정 2018.02.23.>

제 23 조 (재임용 탈락자의 불복절차) 재임용에서 탈락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04.30, 2012.07.22, 2017.05.26, 2018.02.23>

[제목개정 2010.04.30.]

제 5 절 기 타

제 24 조 (승급) 교원의 승급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25 조 (보직) 교원을 부총장, 대학원장, 학장 및 실·처장의 보직에 보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이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보하고, 기타의 보직은 총장이 보하되, 즉시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임기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교원의 보직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11.14.>

제 3 장 신 분 보 장

제 26 조 (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의 금지)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학교법인 상명학원 정관」 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임용기간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부(과)의 개폐에 의하여 과원이 된 때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05.26.>

제 26 조의2 (소속변경) 교원의 소속변경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1.14.]

제 27 조 (정년) ① 교원의 정년은 만 65세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② 교원의 정년퇴직 기준일은 정년에 해당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로 한다.

제 28 조 (휴직 및 면직) 교원의 휴직 또는 면직의 사유, 기간, 복직, 처우 등에 대하여는 「학교법인 상명학원 정관」이 정한 바에 의한다. <개정 2017.05.26.>

제 4 장 보 수

제 29 조 (보수) 교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5 장 보 칙

제 30 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교법인 상명학원 정관」 및 관계 법령과 관할청의 인사지침을 준용한다. <개정 2017.05.26.>

부 칙

이 규정은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1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이 규정은 1992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사항)이 규정 개정 이전에 학과장으로 기임명된 교원이 학과장으로 재임명될 경우에는 그 임기를 1년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4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교수직급 승진시 박사학위 취득 요건에 대한 특례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부교수에 대하여는 규정 제17조 ①항 4호 및 제18조에 의한 교수직급 승진시 박사학위 취득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교수업적평가 점수 반영 경과조치) 규정 제17조 ③항에 의한 승진요건 및 제22조에 의한 재임용 요건의 교수업적 평가점수 반영은 교수업적평가규정 시행년도(1997)부터 점진적으로 반영하되 그 기준은 제10조 ②항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9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제17조 1항 2호 및 3항, 제22조 1항 2호 및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1학년도 대상자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3항과 제17조 제1항 제4호와 제18조는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7조 제1항 제4호와 제18조의 시행일 이전 적용은 변경 전 규정을 따른다.

② (경과조치) 승진임용시기와 재임용시기를 조정함으로써 발생한 승진임용시기의 1개월 미충족분은 충족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7조 제1항 제3호 및 제21조 제1항 제3호는 2006년 3월 1일 임용부터 적용한다.

② (기간 임용된 교원의 재임용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임용되어 재직중인 교원의 재임용 관련 절차는 제22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변경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② (임용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2007년 3월 1일 이전에 임용된 부교수는 근무기간을 정년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본부칙신설 2007.06.08.]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본부칙신설 2009.08.28.]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조 제2항은 2009년 3월1일 임용자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2008학년도 2학기 이전에 임용된 교원의 경우 현행직급으로 부터 승진/재임용은 기존의 규정에 따르되, 그 이후에는 본 규정을 따른다.

[본부칙신설 2010.02.19.]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조 제2항은 2009년 3월 1일 신규임용자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1. 2008학년도 제2학기 이전 신규임용자의 승진임용에 소요되는 연구실적은 (별표1)의 “일반트랙”에 의한다.

2. 2008학년도 제2학기 이전 신규임용자의 승진임용 및 재임용에 소요되는 업적평가 점수는 현행직급에서 최초로 승진임용 또는 재임용하는 1회에 한하여 (별표2-1)에 의하며, 그 이후의 승진임용 또는 재임용은 (별표2)와 같다.

[본부칙신설 2010.04.30.]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부칙신설 2011.03.01.]

부 칙

[본부칙신설 2012.07.22.]

제 1 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①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전임강사는 이 규정에 따른 조

3-1-3 교원인사 규정

교수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전임강사 근무경력은 이 규정에 따른 조교수 근무 경력으로 본다.

③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교수로 신규임용된 자가 부교수로 승진할 경우 그 소요 기간은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4년으로 한다.

④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교수로 재직중인 자가 (별표1)에 의하여 승진할 경우 그 평가 대상기간은 조교수 임용일자 이후부터 기산한다.

⑤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교수로 재직중인자의 현재 임용기간은 종전과 같으며, 그 후의 임용기간은 개정규정 제7조 제1항 제3호에 의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전 전임강사의 재임용기간은 개정규정 제7조 제1항 제3호의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 (전직기관 근무경력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제19조 제1항의 전직기관 근무기간 인정은 2012년 9월 1일 조교수 신규임용자부터 적용한다.

③ (재임용 연구실적물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 제1항 제4호는 2013년 3월 1일 임용자부터 적용하며, 이전 임용자의 경우 개정 전 규정을 따른다.

[본부칙신설 2012.12.04.]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 (신규채용 교원의 연구실적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제14조 제3항 제7호의 단서는 2013년 12월 1일자부터 소급적용 한다.

[본부칙신설 2014.01.09.]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본부칙신설 2014.06.10.]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 (승진임용 및 재임용의 연구실적 반영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정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제17조 제3항 및 제21조 제1항 제4호는 2014학년도 실적부터 소급적용 한다.

[본부칙신설 2015.05.28.]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본부칙신설 2015.11.27.]

부 칙

① (시행일)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 한다.

② (재임용의 경과조치) 제1항의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2016년 9월 1일 전에 임용된 자는 2016년 9월 1일 이후 최초로 재임용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종전규정과 현 규정 중 유리한 규정을 적용한다.

[본부칙신설 2016.09.01.]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본부칙신설 2017.05.26.]

부 칙

① 이 규정은 2018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2018.3.1. 이후 신규 및 승진임용자는 "별표 1" 승진을 위한 교수 연구실적의 2018.3.1 이후 조교수, 부교수 임용자 연구실적 기준을 적용한다.

③ 2018.3.1. 이후 임용자의 재임용에 대한 제21조 제1항 제4호의 연구실적물 인정은 "별표 1" '2018.3.1 이후 신규 및 승진임용자 적용' 인정환산방법에 따른다.

[본부칙신설 2018.02.23.]

부 칙

① 이 규정은 2018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항의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2018년 8월 31일 이전 임용된 교원에 한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대학특별봉사실적을 반영할 수 있다. 단, 승진임용 또는 재임용된 이후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여 대학특별봉사실적을 반영하지 않는다.

1. 승진임용: 국내학술지 실적 기준의 최대 50% 이내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

2. 재임용: 연구실적물 기준의 최대 150% 이내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부칙신설 2018.08.31.]

부 칙

①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1항의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2019년 2월 28일 이전에 임용된 교원의 재임용 연구실적률 기준을 300% 이상으로 하며, 「교원학술연구 규정」 제4조 "연구실적률의 범위" 내의 실적물로 한다. 단, 승진임용 또는 재임용 된 이후에는 제21조에 의한다.

[본부칙신설 2019.03.01.]

부 칙

① 이 규정은 2019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② (산학협력중점트랙 재임용) 제1항의 시행일에도 불구하고 제21조 제4항은 2019년 3월 1일자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본부칙신설 2019.08.14.]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본부칙신설 2019.11.14.]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본부칙신설 2020.07.10.]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본부칙신설 2021.10.21.]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본부칙신설 2021.12.20.]

부 칙

- ① 이 규정은 2022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② 2018.3.1. 이후 신규임용자 및 승진임용자는 "별표 1" 의 2018. 3. 1. 이후 조교수·부교수 임용자 기준 및 [2022. 3. 1. 이후 신규임용 및 승진임용자 적용] 해설을 따르며, 기술이전료는 2022학년도 임금액부터 수주액으로 인정한다.
[본부칙신설 2022.02.25.][개정 2022.04.29]

부 칙

- ① 이 규정은 2022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② "별표 1" [2022. 3. 1. 이후 신규임용 및 승진임용자 적용] 해설은 [2018. 3. 1. 이후 신규임용 및 승진임용자 적용]으로 변경하며 2018. 3. 1. 이후 신규임용 및 승진임용자에게 소급 적용한다.
[본부칙신설 2022.04.29.]

부 칙

- ① 이 규정은 2024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② 「비정년트랙전임교원 인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 제8항을 삭제한다.
- ③ (비정년트랙 재직기간 승진소요 최저연수 합산에 관한 경과조치) 2022년 4월 29일 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관한 규정」 개정 전에 이미 정년트랙 조교수로 전환임용되어 부교수로 승진한 경우에는 개정사항에 따른 비정년트랙 재직기간 인정률 차이를 교수 직급 승진 시 반영할 수 있다.
[본부칙신설 2024.02.27]

3-1-3 교원인사 규정

(별표1)

승진을 위한 교수 연구실적

범 려
국제: 국제학술지(일반+저명) 국제저명: SCI(E), SSCI, A&HCI, SCOPUS 국내: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이상 (* 등재 후보지는 2012학년도까지 인정) 창작: 「교수업적평가 규정」에 의한 창작 작품 수주액: 외부연구비 수주액(발전기금수탁교류액 포함)

학문분야	연 구 실 적
	승진 예정 직급-부교수(최근 6년 실적 기준) 2012. 7. 22 이후 조교수 임용자
인문과학 사회과학	일반트랙 [국제 250%(필수) + 국내] ≥ 700% 또는 국내 ≥ 900% 연구중점트랙 [국제 300%(필수) + 국내] ≥ 1,000% 산학협력중점트랙 [국내 300%(필수) + 수주액 2.7억(필수)] 이상
자연과학 전산정보과학	일반트랙 [국제저명 250%(필수) + 국내] ≥ 900% 연구중점트랙 [국제저명 450%(필수) + 국내] ≥ 1,300% 산학협력중점트랙 {230%[국제저명 90%(필수) + 국내] + 수주액 8.1억원(필수)} 이상
공 학	일반트랙 [국제저명 250%(필수) + 국내] ≥ 900% 연구중점트랙 [국제저명 450%(필수) + 국내] ≥ 1,300% 산학협력중점트랙 {230%[국제저명 90%(필수) + 국내] + 수주액 8.1억원(필수)} 이상
조형예술 · 디자인 공연예술 음악예술 체육과학	일반트랙 [국제 250%(필수) + 국내] ≥ 700% 또는 국내 ≥ 900% 또는 창작 ≥ 1000점 연구중점트랙 [국제 300%(필수) + 국내] ≥ 1,000% 산학협력중점트랙 [국내 300%(필수) + 수주액 2.7억원(필수)] 이상 또는 [창작 360점(필수) + 수주액 2.7억원(필수)] 이상

범 례
국제: 국제학술지(일반+저명) 국제저명: SCI(E), SSCI, A&HCI, SCOPUS 국내: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이상 (※ 등재 후보지는 2012학년도까지 인정) 창작: 「교수업적평가 규정」에 의한 창작 작품 수주액: 외부연구비 수주액(발전기금수탁교류액 포함)

학문분야	연 구 실 적
	승진 예정 직급-교수(최근 5년 실적 기준) 2012. 7. 22 이후 부교수 임용자
인문과학 사회과학	일반트랙 [국제 150%(필수) + 국내] ≥ 500% 또는 국내 ≥ 600% 연구중점트랙 [국제 200%(필수) + 국내] ≥ 750% 산학협력중점트랙 [국내 200%(필수) + 수주액 2.25억원(필수)] 이상
자연과학 전산정보과학	일반트랙 [국제저명 150%(필수) + 국내] ≥ 600% 연구중점트랙 [국제저명 300%(필수) + 국내] ≥ 900% 산학협력중점트랙 [국내190%(필수) + 수주액 6.75억원(필수)] 이상
공 학	일반트랙 [국제저명 150%(필수) + 국내] ≥ 600% 연구중점트랙 [국제저명 300%(필수) + 국내] ≥ 900% 산학협력중점트랙 [국내190%(필수) + 수주액 6.75억원(필수)] 이상
조형예술 · 디자인 공연예술 음악예술 체육과학	일반트랙 [국제 150%(필수) + 국내] ≥ 500% 또는 국내 ≥ 600% 또는 창작 ≥ 750점 연구중점트랙 [국제 200%(필수) + 국내] ≥ 750% 산학협력중점트랙 [국내 200%(필수) + 수주액 2.25억원(필수)] 이상 또는 [창작 300점(필수) + 수주액 2.25억원(필수)] 이상

3-1-3 교원인사 규정

범 례
국제저명: SCI(E), SSCI, A&HCI, SCOPUS 국내: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이상 창작: 「교수업적평가 규정」에 의한 창작 작품 수주액: 외부연구비 수주액(발전기금수탁교류액 포함), 기술이전료(※ 2022학년도 임금액부터 인정)

학문분야	연 구 실 적
	승진 예정 직급-부교수(최근 6년 실적 기준) 2018. 3. 1 이후 조교수 임용자
인문과학 사회과학	일반트랙 [국제저명 280%(필수) + 국내] ≥ 840% 연구중점트랙 [국제저명 340%(필수) + 국내] ≥ 1,200% 산학협력중점트랙 [국내 300%(필수) + 수주액 2.7억원(필수)] 이상
자연과학 전산정보과학	일반트랙 [국제저명 280%(필수) + 국내] ≥ 840% 연구중점트랙 [국제저명 510%(필수) + 국내] ≥ 1,200% 산학협력중점트랙 [230%{국제저명 90%(필수) + 국내} + 수주액 8.1억원(필수)] 이상
공 학	일반트랙 [국제저명 280%(필수) + 국내] ≥ 840% 연구중점트랙 [국제저명 510%(필수) + 국내] ≥ 1,200% 산학협력중점트랙 [230%{국제저명 90%(필수) + 국내} + 수주액 8.1억원(필수)] 이상
조형예술 · 디자인 공연예술 음악예술 체육과학	일반트랙 [국제저명 280%(필수) + 국내] ≥ 840% 또는 창작(지정항목 필수) ≥ 1,120점 연구중점트랙 [국제저명 340%(필수) + 국내] ≥ 1,200% 산학협력중점트랙 [국내 300%(필수) + 수주액 2.7억원(필수)] 이상 또는 [창작 360점(필수, 지정항목 포함) + 수주액 2.7억원(필수)] 이상

범 례
국제저명: SCI(E), SSCI, A&HCI, SCOPUS 국내: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이상 창작: 「교수업적평가 규정」에 의한 창작 작품 수주액: 외부연구비 수주액(발전기금수탁교류액 포함), 기술이전료(※ 2022학년도 입금액부터 인정)

학문분야	연 구 실 적
	승진 예정 직급-교수(최근 5년 실적 기준) 2018. 3. 1 이후 부교수 임용자
인문과학 사회과학	일반트랙 [국제저명 200%(필수) + 국내] ≥ 700% 연구중점트랙 [국제저명 240%(필수) + 국내] ≥ 1,000% 산학협력중점트랙 [국내 200%(필수) + 수주액 2.25억원(필수)] 이상
자연과학 전산정보과학	일반트랙 [국제저명 200%(필수) + 국내] ≥ 700% 연구중점트랙 [국제저명 360%(필수) + 국내] ≥ 1,000% 산학협력중점트랙 [190%{국제저명 60%(필수) + 국내} + 수주액 6.75억원(필수)] 이상
공 학	일반트랙 [국제저명 200%(필수) + 국내] ≥ 700% 연구중점트랙 [국제저명 360%(필수) + 국내] ≥ 1,000% 산학협력중점트랙 [190%{국제저명 60%(필수) + 국내} + 수주액 6.75억원(필수)] 이상
조형예술 · 디자인 공연예술 음악예술 체육과학	일반트랙 [국제저명 200%(필수) + 국내] ≥ 700% 또는 창작(지정항목 필수) ≥ 940점 연구중점트랙 [국제저명 240%(필수) + 국내] ≥ 1,000% 산학협력중점트랙 [국내 200%(필수) + 수주액 2.25억원(필수)] 이상 또는 [창작 300점(필수, 지정항목 포함) + 수주액 2.25억원(필수)] 이상

3-1-3 교원인사 규정

[2018. 2. 28. 이전 신규임용자 및 승진임용자 적용]

1. 일반트랙 교원은 산학협력중점트랙 승진기준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외부연구비 수주액은 산학협력단을 통하여 수주한 연구비 중 본인의 실제 배분액(계약금액 중 배분되어 입금된 금액)을 말한다. ※ 산학협력단 계좌를 기반으로 한 가상계좌 입금액 포함
3. 국제저명학술지 가운데 SSCI, A&HCI, SCI(E)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의 2배로 인정한다.
(단, SCI(E)의 경우 IF가 1.0이상이어야 함. 1.0미만은 1배만 인정)
4. 연구논문의 인정환산율은 다음과 같다.

인 정 환 산 율	연구자수	공동저자	주저자(책임저자, 교신저자 또는 제1저자 포함)
	1인		100%
	2인	70%	80%
	3인	50%	70%
	4인이상	30%	60%
※ 주저자(책임저자, 교신저자 또는 제1저자를 포함한다)는 당해 논문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명기된 경우와 해당교원이 관련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5. 최근 실적이라 함은 승진 예정일로부터 역산한 기간의 연구실적(승진심사하기 말일까지 완료되는 연구실적을 포함)을 말하며, 본 규정 제19조에 의하여 최저연수가 단축된 경우에도 승진임용 실적 기준은 동일하다.
6. 학문분야 중 조형예술·디자인, 공연예술, 음악예술, 체육과학 분야의 승진임용 대상자가 학술지에 게재한 연구논문과 창작작품을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 연구논문의 연구실적을 다음과 같이 창작작품 점수에 합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 다 음 -

가. 위 제3호의 국제저명학술지에 게재한 연구실적 100% : 200점 인정

나.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등재 후보지는 2012학년도까지 인정) 및 기타 국제학술지에 게재한 연구실적 100% : 100점 인정

※ 위 가, 나항의 공동연구는 제4호의 인정환산율 적용

[2018. 3. 1. 이후 신규임용 및 승진임용자 적용]

1. 일반트랙 교원은 산학협력중점트랙 승진기준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외부연구비 수주액 및 기술이전료는 산학협력단을 통하여 수주한 연구비(기술이전료) 중 본인의 실제 배분액(계약금액 중 배분되어 입금된 금액)을 말한다. ※ 산학협력단 계좌를 기반으로 한 가상 계좌 입금액 포함
3. 연구실적 인정율의 산정
 - 가. 인문사회계열 및 예체능계열
 - 1) 국제저명학술지 인정율

구 분	인정율	비 고
SCOPUS	100%	
SSCI, A&HCI, SCI(E)	200%	단, SCI(E)의 경우 IF가 1.0이상 이어야 2배 인정함. 1.0미만은 1배만 인정

- ※ 예) 일반트랙 [국제저명 280%(필수) + 국내] ≥ 840% 기준인 경우 SSCI에 200% 게재하였을 때 [국제저명 400% 인정 + 국내 440%] ≥ 840%을 충족하면 됨.
- 2) 국내학술지(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2배로 국제저명학술지를 대체(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200% → 국제저명학술지 100%)할 수 있다. 대체할 경우 대체 논문의 총 실적 대비 주저자 실적 비율이 60% 이상이어야 한다. 단, 연구중점트랙은 대체 불가함.
 - 3) 국제(일반)학술지는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와 동일하게 인정한다.

나. 자연·전산정보과학 및 공학 계열: SCI급 저널(SCI(E))의 경우 등급별 가산점을 적용

구 분	인정율
JCR Q1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의 2배
JCR Q2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의 1.5배
JCR Q3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의 1.2배
JCR Q4 및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와 동일

다. 산학협력중점트랙의 외부연구비 수주액 및 기술이전료 연구실적 대체 인정

- 1) 연구실적 기준의 외부연구비 수주액 기준을 초과한 ‘간접비가 있는 과제의 외부연구비 수주액’ 과 ‘기술이전료’ 는 아래 표의 비율로 환산하여 연구실적으로 대체 인정 할 수 있다. 단, 초과금 산정시 기술이전료부터 우선 적용한다.

구분	실적급	학문분야	수주금액	연구실적 인정율
외부연구비 수주액	국내	인문사회·예체능 계열	2,500만원당	100%
		자연·전산정보과학·공학 계열	5,000만원당	100%
	국제저명	인문사회·예체능 계열	5,000만원당	100%
		자연·전산정보과학·공학계열	1억원당	100%
기술이전료	국내	인문사회·예체능 계열	1,000만원당	100%
		자연·전산정보과학·공학계열	2,000만원당	100%

3-1-3 교원인사 규정

4. 저자수에 따른 연구논문 인정율 및 주저자 비율 조건

가. 연구논문의 인정환산율

인 정 환 산 율	연구자수	주저자(책임저자, 교신저자 또는 제1저자 포함)	공동저자
	1인 2인 3인 4인 이상	100% 80% 70% 60%	1인: 100% 2인: 70% 3인 이상: $1/(n+1) \times 100\%$ (n: 전체 저자 수) ※ 소수점 이하 절사함.
※ 주저자(책임저자, 교신저자 또는 제1저자를 포함한다)는 당해 논문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명기된 경우와 해당교원이 관련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나. 국제저명학술지 필수인 경우 주저자 논문 비율이 60% 이상이어야 한다.

예) 인문과학 일반트랙 조교수: 국제저명 280%(필수)인 경우 280%의 60%인 168%는 주저자 논문이어야 함.

5. 창작의 경우 필수 지정항목

가. 일반트랙

- 음악, 영화영상, 연극, 문화예술경영, 무대미술, 무용: 배점 200점 이상 항목(1개 이상)
- 조형예술, 생활예술, 디자인, 애니메이션, 만화, 사진영상콘텐츠: 배점 250점 이상 항목(1개 이상)

나. 산학협력트랙

- 배점 100점 이상 항목 (1개 이상, 모든 전공 동일)

6. 최근 실적이라 함은 승진 예정일로부터 역산한 기간의 연구실적(승진심사학기 말일까지 완료되는 연구실적을 포함)을 말하며, 본 규정 제19조에 의하여 최저연수가 단축된 경우에도 승진임용 실적 기준은 동일하다.

7. 학문분야 중 조형예술·디자인, 공연예술, 음악예술, 체육과학 분야의 승진임용 대상자가 학술지에 게재한 연구논문과 창작작품을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 연구논문의 연구실적을 다음과 같이 창작작품 점수에 합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 다 음 -

가. 위 제3호의 국제저명학술지에 게재한 연구실적 100% : 400점 인정

나.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및 기타 국제학술지에 게재한 연구실적 100% : 200점 인정

※ 위 가, 나항의 공동연구는 제4호의 인정환산율 적용

(별표2)

재임용을 위한 연간 업적평가 기준 점수
(교육, 연구, 산학 및 봉사영역의 합)

대상년도	학문분야별 업적평가 연간 점수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전산정보과학	공학	조형예술·디자인, 공연예술, 음악예술, 체육과학
2010학년도 이전	675점	750점	750점	750점
2011학년도 이후	1,300점	1,400점	1,400점	1,300점
산학협력중점 트랙 교원 중 2016학년도 이후 임용자	1,300점	1,400점	1,400점	1,300점
	외부연구비 연간 수주 입금액 *(발전기금수탁교류액 포함) 연간 실적 기준 포함 ※ *산학협력단 계좌를 기반으로 한 가상계좌 입금액 포함			
	3,100만원	9,400만원	9,400만원	3,100만원

1. 재임용 기준 점수 산출 방법: 해당 재임용 대상기간 중 연간 업적평가 기준점수의 합계
2. 적용방법
 - 가. 2016년 9월 1일 전 임용자
 - 1) 신규임용자에 대한 최초 재임용 평가 시, 3월 1일자 신규임용자의 경우에는 최종 평가년도의 업적평가 점수가 집계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업적평가 기준 점수 및 대상기간에서 제외하며, 9월 1일자 신규임용자의 경우에는 최종 평가학기를 업적평가에서 제외하되 최초 임용학기의 업적평가점수를 2배로 환산하여 적용함.
 - 2) 최초 재임용 이후의 재임용 평가 시에는 이전의 재임용 평가 대상기간 중 미반영된 실적분을 다음 재임용에 반영함.
 - 나. 2016년 9월 1일 이후 임용자

재임용 평가 시, 3월 1일자 재임용자의 최종 평가년도 업적평가와 9월 1일자 재임용자의 최종 평가학기 업적평가는 특별업적평가(교수업적평가 규정 별첨5에 의함)를 적용함.
 - 다. 연구년(해외연수) 기간의 업적평가 중 교육영역 점수는 해당 재임용 대상기간 중 잔여 대상기간의 평균점을 부여함.
 - 라. 「**복무규정 제25조 제2항 및 제4항에 의한 휴가**, 휴직, 소송 등으로 부득이하게 업적평가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업적평가 기준 점수(**외부연구비 수주 입금액 연간 실적 기준 포함**) 및 대상기간에서 제외하여 산정함.
3. 재임용 충족요건: 재임용 평가 대상기간의 업적평가 합계점수가 위 “1”에 의하여 산출된 재임용 기준 점수 이상인 경우